

# IMO 제17차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위원회(BLG)

## I. 일반사항

- 회 의 명 : IMO 제17차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위원회  
(17th Session of Sub-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)
- 기간/장소 : '13. 2. 4~2. 8(5일간)  
IMO Headquarters, 영국 런던
- 참 석 자 : KST 정부대행검사실 마주환 주임  
검사원

## II. 주요 의제 목차

1. [의제 2] 다른 IMO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결정 사항
2. [의제 3]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·안전성 평가
3. [의제 4] BWB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서
4. [의제 6] 대기오염 감소 및 BWMS를 위해 승인된 신기술들
5. [의제 7] 선박 생물부착을 통한 침해성 수중 생물의 이동을 최소화를 위한 국제 방안 개발
6. [의제 8] 가스·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국제 가스연료추진선박안전코드(IGF Code) 개발
7. [의제 9] IGC CODE 개정
8. [의제 10] 블랙카본
9. [의제 11]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경과 검토
10. [의제 12] 육상지원선박의 산적유해액체물질 수송·취급에 관한 규정(OSV Chemical Code)

제정

11. [의제14] "IACS의 통일해석"에 관한 논의

## III.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1	의제 채택 및 작업반 구성
------	----------------

- WG 1
  -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·안전성 평가
- WG 2
  - BWB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서
- WG 3
  - IGF CODE 개발
- DG 1
  - IGC CODE 개정
- DG 2
  - 블랙카본
  -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경과 검토

의제 3	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·안전성 평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의제 주요내용(신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 결정)
  - ESPH 18차('12. 10) 작업반에서 검토한 신규 화학제품들의 선박운송요건 논의
- 논의 내용 및 결과
  - ESPH 작업반에서 검토한 다음의 신규 화학

제품의 선박운송요건에 동의하고, 차기 IBC Code 개정 시 동 화학제품들을 추가하기로 결정

- 작업반에서 논의된 신규화학제품 : Grape Seed Oil, Bis(2-ethylhexyl) terephthalate, Aluminium hydroxide, sodium hydroxide, sodium carbonate solution, (40% or less), Tert-Amyl ethyl ether, Camelina Oil, Acrylic acid, ethenesulfonic acid copolymer with phosphonate groups, sodium salt solution, Maleic anhydride-sodium allylsulfonate copolymer solution
- 회기 중 제출된 다음의 신규화학제품에 대한 선박운송요건을 정함 : Surfom CS 5015, Tall oil soap, crude, Alkanes(C10-C26), linear and branched(인화점  $\leq 60^{\circ}\text{C}$ ), Methoxypolyglycol Basic, MP Cresol 45

#### □ 향후 계획

- 신규화학제품들에 대한 사항들이 국내법으로 미수용 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내법 제정 검토 필요

#### ② 의제 주요내용(신규 탱크세정제 평가)

- ESPH 작업반에서 검토한 25개 신규 탱크 세정제의 평가결과 논의

##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세정제 중, 일부는 발암성, 돌연변이유발, 생식독성 및 자극성이 있는 제품이 있어, 해당 국가가 관련사항을 제조자에게 잘 전달해 줄 것을 당부

#### □ 향후 계획

- 평가된 세정제는 MEPC 승인을 받아 MEPC.

2/Circ.19(잠정평가물질목록, Provisional categorization of liquid substances('13. 12), Annex 10)에 등재 및 회람될 예정

#### ③ 의제 주요내용(산적액체화학제품의 운송요건 검토에 필요한 국제기준 및 지침서 통합정보)

- 새로운 화학제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구와 장치들을 사용하여 안전성 및 오염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나,
- 제조자가 파악해야하는 화학물질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산적액체화학제품의 운반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에 관한 의제를 제출함

##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아국에서 개발한 산적액체화학제품의 운송요건 검토에 필요한 국제기준 및 지침서 통합정보가 유용한 정보임에 동의
- 통합정보를 산업계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IMO 웹사이트(website)에 수록하고, 당 정보가 IMO 웹사이트에 수록되어 있다는 내용과 웹사이트 주소를 매년 정기 발행되는 MEPC.2/Circular(잠정평가물질 목록)에 명확히 표시하기로 결정

#### ④ 의제 주요내용(IBC Code 제21장 안전유해성 평가기준 개정검토)

- IBC CODE 개정에 따른 변경된화학물질의 안전유해성 평가기준으로 2004년 이전에 선박운송요건이 결정된 제품들을 일괄평가할 경우 특정제품(대부분)의 운송요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BLG 16(12, 1)은 IBC Code 제21장 안전 유해성 평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면, IBC Code 대상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을 개정하고, 동 Code를 2016년 채택, 2018 의무화하는 ESPH 작업반의 잠정 개정계획에 동의
- BLG 17은 네덜란드, 노르웨이 및 CEFIC에서 제안한(BLG 17/3/2) 선형, 탱크형식 또는 선박운송요건 결정 기준이 되는 물 반응성 지수, 자극성, 부식성 및 장기건강영향에 대한 안전 유해성에 대한 검토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계속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
  - 물 반응성 지수(WRI) 3에 대한 정의를 신설, 극히 물 반응성이 있는 물질은 선형 1 지정, WRI 2는 선형 2로 지정
  - WRI = 3일 경우에만 탱크형식 1G로 지정
  - 자극성 및 피부 부식성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

□ 향후 계획

- IBC Code 제21장 선박운송요건 결정기준 개정으로 화학제품의 선박운송요건이 상향되기 때문에 운송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. 하지만, 일부 제품의 경우 선박운송요건 상향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업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아국 운송업계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

**의제 4 | BWM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지침서**

- ① 의제 주요내용(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한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지침)
  - BLG 16에서는 본 지침(Annex 1)을 작업반

에서 검토를 완료하고 위원회의 채택을 요청하였으나, 샘플링 및 분석기술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이 없는 등 적용기술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국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채택되지 못하고 BLG 17에서 재검토하기로한 사항임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형식승인지침서(G8) 및 형식승인관련 지침서(BWM.2/Circ.28) 개정 초안 채택 및 MEPC 승인 요청
- 다음 사항들을 형식승인지침서(G8)의 형식 승인증서 기재사항에 추가함
  - 허용 염도, 온도, UV 투과도 등의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제약 요건
  - 최소/최대 TRO, 최소/최대 압력, 차압 등의 시스템 운전 변수의 허용 범위
  -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시의 모든 시험변수를 기재한 시험결과(염도, 온도, 유량, 자외선 투과도 등)
- 추가제공 정보
  - 시험 생물의 종류, 자연/배양 생물 또는 이의 혼합사용 여부
  - 선상시험시 운전 변수들이 포함된 시험내용
  - 정격처리용량에서의 에너지 사용량(정보 제공 가능한 경우)
  - 실패 및 유효하지 않은 시험결과를 포함한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 보고서 일체
  - 시험설비 또는 시험기관의 품질보증문서(QA/QC)
  - 시험기관의 국가 인증
  - 활성물질 사용에 대한 IMO 승인관련 MEPC 문서 및 해당 문구의 번호
- 형식승인관련 지침(BWM.2/Circ.28) 개정용

#### 통한 요건 추가

- 형식승인신청시 정부에 제출할 추가 정보 요건
- 처리장치가 운전될 염도, 온도 및 침전물 제한 범위 검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
- 최대 및 최소처리용량 검증 정보 및 해당 시험의 지속 시험시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
- 안전 또는 추가 연구 개발과 관련된 개선 제안
- 실패 및 유효하지 않은 시험결과를 포함한 실험실 규모 시험, 육상시험 선상시험 결과를 정부에 정보 제공
- 승인된 모니터링 장비가 요구되며 운전변수에 대한 허용범위를 규정한 TSP (Treatment System Particular) 문서를 정부가 발행함
- 안전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선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분석 및 관련된 선급의 안전 및 위험도 규정 또는 권고에 대한 참조
- 회원국 정부에서는 개정될 형식승인지침서(G8)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 문서를 포함하여 IMO로 송부가 요구됨

#### □ 향후 계획

- ‘평형수관리협약 배출수 기준의 충족여부 평가를 위한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 지침’이 협약 발효 후 2~3년간의 시범기간을 조건으로 MEPC 승인이 요청됨에 따라 시범기간 동안 샘플링 및 분석 기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임
- 이에 따른 향후 샘플링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의 PSC 검사 적용성 평가를 위한 국내 연구의 진행 필요

- 평형수관리장치 형식승인시 제공 정보의 추가를 위해 형식승인지침서(G8) 개정 승인이 위원회로 요청됨에 따라 추가의 정보제공을 위해 개정된 잠정기준에 따라 추가의 시험을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험절차에 대해 국내 논의 및 시험 진행 필요

#### ② 의제 주요내용(평형수관리장치의 모니터링 및 샘플링에 대한 상세사항)

- 독일은 각 승인된 평형수처리장치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한 ‘처리장치상세(Treatment System Particular, TPS)’ 문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, TPS에 규정된 해당 운전 요소들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모니터링 및 기록되어야 함을 제안함

##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상세 모니터링 및 TPS 항목에 대해서는 MEPC 65까지 회기간 비공식 통신반 활동을 통해 초안을 확정하기로 함

#### ③ 의제 주요내용(평형수관리장치의 모니터링 및 샘플링에 대한 상세사항)

- 육상지원선박(OSV)이 MEPC 61/24 문건에서 언급한 “특별한 형태”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, MEPC 64차에서 부터 연안 운송선박에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인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시작됨
- 이러한 특정 선박들에 대한 협약의 규정의 이행을 촉진 하기 위하여 BLG 하위위원회에서 회람을 개시하는 것에 동의하여, 이에 대한 지침 초안을 제출 및 논의

논의 내용 및 결과

- OSV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결정
  - 평형수관리협약 A-4(동일 생물분포 지역으로 외래 종 이동의 위험도가 없는 경우)에 따른 협약의 적용 예외의 경우
  - 평형수가 배출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이 당국에 의해 결정될 경우
  - 임시 평형수 관리장치를 사용한 경우
  - 다른 선박에 설치된 평형수 관리장치의 사용 또는 육상수용시설을 이용한 경우
  - 평형수 처리기준을 만족하는 형식승인 된 평형수 관리 장치를 영구 설치한 경우

의제 6	대기오염 감소 및 BWMS를 위해 승인된 신기술들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의제 주요내용(BWMS 및 평형수 탱크 코팅 사이의 적합성)

- 페인트 코팅 및 부식과 관련된 전문단체인 IPPIC 및 NACE에서 통일성 있는 방안이 아닌 각기 다른 제안을 MEPC 64에 제시함에 따라서 위원회는 두 전문단체 간 논의를 통해 통일화된 권고를 BLG 17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

논의 내용 및 결과

- NACE TM 0112 방법에 따라서 부식시험을 진행할 것이 제안되었으며, 기술적 검토를 GESAMP-BWWG 5차 stocktaking 워크숍에서 IPPIC 및 NACE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검토한 후 향후 GESAMP-BWWG Methodology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함

의제 7	선박 생물부착을 통한 침해성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방안 개발
------	---

의제 주요내용(‘침입성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박 생물부착의 통제 및 관리 지침서’를 평가하기 위한 지도서 초안)

- BLG 15차에서 본 지침서를 승인하고, 2011년 7월에 MEPC.207(62) 결의서로 채택함. BLG 15/9 문서, 부록 5에 지침서가 채택되었을 때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간, 기준 및 절차를 제시
- BLG 15차 및 16차 회의에서 시간제약 때문에 작업반에서 유효성 평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지 못했고, BLG 17차 회의에서 작업반을 재결성하여 검토하되,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기로 결정함

논의 내용 및 결과

- BLG 15에서 승인한 지침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성과측정의 정보 수집용 설문지 초안을 검토 보완하였음
- 위 설문을 위하여 IMO 사무국에서는 GISIS를 통해 정보 수집을 진행하기로 함

향후 계획

- 선박 생물부착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지침서 유효성 평가를 위해 성과측정의 정보 수집용 설문지 GISIS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. 정부 및 관련 산업단체에서 해당 설문에 참여하도록 협조가 필요함

의제 8	가스·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국제 가스연료추진선박안전코드(IGF Code) 개발
------	--

## □ 의제 주요내용

- BLG 14('10. 2)에서 Res.MSC285(86) “가스 연료엔진이 탑재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잠정 지침서”를 바탕으로 IGF 코드화를 작업하기로 결정함
- 2014년을 작업완료 목표로 통신작업반에 코드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함. 그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물들에 대하여 논의함

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FP Sub-Committee 회의 결과를 IGF 코드 초안에 포함시킴
  - 화재탐지 관련규정
  - 방열구조 관련규정
- 압축천연가스 관련규정을 IGF 코드 초안 A-1 (가스연료선박 건조관련 규정)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압축천연가스 관련규정을 별도의 Part로 만들지는 않기로 함
- 가스연료선박에 사용되는 Portable 가스연료 탱크는 가스연료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가스연료탱크와 동일한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개발하기로 합의함
- 다음의 Chapter를 검토하여 수정함
  - Ch.5.11 진입에 관한 배치
  - Ch.2.2.20 위험구역(Dangerous zone)에 관한 정의
  - Ch.15 폭발방지 규정
- Ch.12 제어·모니터링 및 안전시스템 규정 : 환기장치(Ventilation)의 입구에 가스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설치유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
- LNG 이외의 저인화점 연료 관련규정을 IGF 코드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,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

대체설계가 IGF 코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의함

- 현재 인화점 60°C 이하의 연료는 SOLAS Reg.II-2 /4.2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, IGF 코드에서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SOLAS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의 개정초안을 개발함
  - SOLAS Reg.II-2/2(화재안전의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)에 IGF Code 관련 사항
  - SOLAS Reg.II-2/Part B(화재 및 폭발 방지 규정)에 가스연료선박 관련 사항
  - SOLAS Reg.II-1/Part F/Regulation.55 (대체 설계 및 배치 규정)에 가스연료 관련 사항
  - SOLAS Reg.II-1/Part G(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)을 신설하여 ‘Reg.56의 적용기준’과 ‘Reg.57의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IGF 코드를 만족하여야 함’을 명기
- 통신작업반 결성여부 논의 관련
  - 이번 W/G에서 논의되지 못한 작업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재결성하여 작업하기로 함

## □ 향후 계획

- 현재까지 개발된 IGF 코드 초안은 아국에서 건조중인 인천항만공사의 가스연료선박과 아국 조선소에서 설계한 가스연료선박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적용 시 문제점이 없으나,
- 향후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(IGF Code)이 아국 조선소에서 설계된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필요

**의제 9 IGC CODE 개정**

의제 주요내용

- MSC 83('07. 10)에서 IGC Code 개정작업의 목표완료 일자를 2010년으로 하여 BLG 전문 위원회 작업프로그램의 우선순위작업항목에 포함시킴
- 새로운 의제들이 계속 추가되어 목표완료 일자가 연장되었고, BLG 16('12. 1)의 초안 작업반에서 검토·제출된 문서(BLG 17/9)에 대한 논의

논의 내용 및 결과

- 초안작업반은 BLG 17/9 문서로 제출된 개정 IGC Code 초안을, BLG 17/9/1~7 문서와 Plenary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, 검토 및 확정 하고 이를 MSC 92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
- IGC Code 개정초안 수정사항
  - 현존선에 대한 적용 관련 규정을 추가함
  - MARPOL 협약을 참조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함
  - “인정기관(RO)은 SOLAS 협약과 RO Code에 적합하여야 한다”라고 문구를 수정함
  - “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”(BLG 17/9/4) 관련 각국에서 한계상태설계에 대한 지침 초안을 MSC 92차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 Plenary의 결정사항에 따라, MSC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괄호로 표기함
  - 14.4(개인보호에 관한 규칙)의 자장식 호흡기 사용가능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수정
  - MPa로 표현된 게이지 압력값 뒤에 “gauge”가 빠져있음을 확인하고, 현재 IGC Code와 대비하여 각 압력값 뒤에 “gauge”를 삽입함
- 개정 IGC Code에 포함되어 있는 Mixed C4

화물과 관련한 규칙을 현존선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논의하였으나, 각 선박별로 특정화물을 싣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기국으로부터 화물적합증서를 발급받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

- 개정 IGC Code 초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, 이의 승인을 위하여 MSC 92차에 제출예정임

향후 계획

- 개정 IGC Code가 채택되었을 때 수정되어야 할 IMO 규정들을 식별하고, 이를 FSI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

**의제 10 블랙카본**

의제 주요내용(국제항해선박이 배출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)

- 북극항로 개설 및 대북항로 운항에 의해 북극 빙의 해빙을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선박배출 블랙카본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위하여 블랙카본의 정의, 측정방법 및 규제방안에 대한 사항에 관한 논의
  - 블랙카본의 정의 : 국제항해 선박배출 블랙 카본은 선박 엔진 등에서 탄소기반 연료의 불완전연소를 통해 생성되는 입자상 배출 물질로써 빛을 강력히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탄소질의 물질로 규정함
  - ※ 블랙카본 측정방법의 조사·분석을 통한 기술적 정의를 차기회의에서 제출 계획
  - 블랙카본 측정 방법 소개 : Photo-acoustic 방법, FSN(Filter Smoke Number) 등
  - ※ 블랙카본 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·

- 분석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제출 계획
- 블랙카본의 배출을 저감 기술 소개 : 엔진 연소개선 기술, 후처리 기술 등

- 일본 및 EU 국가들은 선박배출 블랙카본 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도입 시기, 규제 대상, 규제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

##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선박배출 블랙카본이 북극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BLG 18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설정할 것을 MEPC에 요청하고 지속적인 통신작업반에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위임함
  - 측정 방법의 개발에 기반한 선박배출 블랙카본의 기술적 정의 개발
  - 선박배출 블랙카본 제어기술·측정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·분석
- 블랙카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정의가 제시되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국의 동의가 이루어졌으며, 향후 블랙카본의 측정방법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통해 기술적 정의를 명시할 것을 합의함
- 특히, 선박배출 블랙카본 규제 논의(정의)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각 회원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
  - 미국은 블랙카본 문제가 북극지역에만 국한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,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블랙카본 규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, 노르웨이, CSC 등이 이를 지지함
  - 중국은 선박배출 블랙카본 문제는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에만 국한됨을 주장하고, 규제 도입 시기의 지연 및 제한적(지역적)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, 러시아 등이 이를 지지함

#### □ 향후 계획

- 선박배출 블랙카본 규제 논의(정의)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한 국내 해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과 연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고,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도입(측정 방법 확립 및 저감 기술 개발)이 필요함

#### 의제 11

####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경과 검토

#### ① 의제 주요내용(MARPOL Annex VI/Reg.4의 동등물과 배출권 거래)

- BLG 16에 의해 결성된 통신작업반에서 MARPOL Annex VI/Reg.4에 규정된 동등물에 관한 지침초안을 개발하였음. 지침초안 개발 중 배출권 거래(emission trading)를 동등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
- 통신작업반에서 배출권 거래를 찬성했던 미국이 회원국의 자격으로 별도 문서를 제출하여 배출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, 승인절차 및 운영 등을 포함시키고자 지침초안 수정(modify)을 제안
- 통신작업반에서 배출권 거래를 반대했던 CSC가 통신작업반 문서(BLG 17/11) 및 미국이 제출한 문서(BLG 17/11/3)에 반발하여, 배출권 거래 채택/승인 중단을 제안

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대다수 회원국들이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또한 본 사안은 MEPC 57차에서 이미 거부된 사안이라 미국이 제안한 지역 배출량 평균화(배출권 거래 제도) 도입은 관철되지 못하고 해양환경위원회에 추가 지침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

② 의제 주요내용(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제안서)

- MEPC 57차에서 채택한 “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지침서” 중 항만 밖에서의 세정수 배출 기준을 별도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·위임함. BLG 15(11, 2)는 동 지침서의 적용에 대하여 관심있는 회원국의 의견 제출을 요청함
- 또한, ImarEST는 Res.MEPC.184(59)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문서(MEPC 60/4/19)를 MEPC 60차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며 다음 회기(61차)는 전문위원회에 검토 위임함. BLG 15차에서 MEPC 60/4/19 문서를 논의 중 ImarEST는 개정 제안(배기가스 정화장치의 세정수 배출 기준 - 항외 배출시 산도(pH) 3.0 이상)에 대한 근거 자료로 해양환경 영향 평가서를 향후 제출하기로 함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덴마크/Interferry가 제출한 문서의 일부 오류 및 설득력 있는 정보 부족으로 대다수 회원국들이 개정을 반대하여 제안한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대한 지침서의 개정은 관철되지 못함

③ 의제 주요내용(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제안서)

- BLG 16차에서는 개정된 MARPOL Annex VI와 NOx Technical Code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했으나, 기준과 지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추가 개정 작업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결성하고 통신작업반은 전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의제를 논의함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통신작업반에서 제출한 초안 지침을 관련 작업반에서 검토 및 개정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작업반이 제출한 개정 초안 지침이 아래와 같이 결정됨
  - Tier III 요건을 만족시키는 엔진을 상업적으로 구하기가 불가하거나,
  - 질소산화물 감축 장치의 크기가 공간 제한된 기관실에 설치 불가하거나,
  - 질소산화물 감축 장치로 인한 열 영향이 선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체되는 엔진이 Tier III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

의제 12	육상지원선박의 산적유해액체물질 수송·취급에 관한 규정(OSV Chemical Code) 제정
-------	---

□ 의제 주요내용

- 육상지원선박의 산적유해액체물질 수송·취급에 관한 코드(OSV Chemical Code) 제정을 위한 초안을 검토

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BLG는 하기 규칙에 집중하여 OSV Chemical Code 초안을 준비할 것을 통신작업반에

## 지시함

- 2장 “선박의 생존증력 및 화물탱크의 위치” : SLF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을 준비할 것
- 3장 “선박의 설계” 및 5장 “화물의 운송” : DE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을 준비할 것
- 8장 “소화” : FP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을 준비할 것

## 의제 14

## “IACS의 통일적 해석(Unified Interpretations)”에 관한 논의

## □ 의제 주요내용

- MARPOL Annex VI(선박으로 부터의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)에 “기관의 교체시나 추가할 당시”의 기준일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지 아니함

## □ 논의 내용 및 결과

- IAPP 증서 추록의 NOx Tier 적용기준의 기관의 “교체 또는 추가시”에 대하여 IACS에서 제출한 통일해석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고, 이의 승인을 위해서 MEPC 65차에 제출할 예정임

## IV. 요약

- 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지침의 시범기간 동안 지침의 표준화를 위해 개별기술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것이므로, 지침에 포함된 기술 및 국내 개발기술들의 검증을 위한 국내 연구 필요
- 평형수장치의 운전 제한사항 검증 및 정보제공 등이 추가 요구되어 개정된 잠정기준에 따라 추가의 검증시험의 신속한 진행 필요
- 선박 생물부착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지침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의 정보 수집용 설문이 GISIS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, 정부 및 관련 산업단체에서 해당 설문에 참여하도록 협조 필요
- 향후 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기준(IGF Code)이 아국 조선소에서 설계된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 필요